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1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1999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99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 「행정자치부 운영 11250 - 668('98.12.16)호 및 서울시 조직 05090 - 1226('98.12.31)호」에 의한 「'99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1일 3회 이상 청소내용 삭제(안 제10조 제1호)
 - 관리카드 비치 내용 삭제(안 제11조)
 - 년 2회 점검 내용(안 제13조)
 - 개선명령 내용 삭제(안 제14조)
 -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 삭제(안 제15조)
 - 유료화장실 승인내용 삭제(안 제16조)
 - 유료화장실 승인 받은 자의 준수사항 내용 삭제(안 제17조)
 -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삭제(안 제18조)
 - 부칙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 조치) 삭제(부칙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유재한)

'99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내용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전문 19조 부칙 4조로 제정되어 있으나 급회에 개정되는 내용이 8개 조항이 상위법에 중복되어 삭제되며, 남은 조항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법 근거가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폐지의 이유를 설명드리면

- 가. 당초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던 것이며
- 나.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집합되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 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이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설치·관리하는 화장실과 법인 또는 개인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관리하는 화장실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들의 설치나 관리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사항으로 특별히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화장실 시설·관리를 구 조례로 만들어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특히 다중이 집합하고 이용하는 건물내의 화장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당시 규모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였던 바 이 내용도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라 하여 '99. 4. 30. 화장실 설치기준이 폐지되므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법인이나 개인의 소유물은 소유주가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소유의 공공용 화장실은 행정지도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에 대한 규제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에 맡기도록 폐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끝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우리 구의 내부방침으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전문19조 및 부칙4조로 제정되어 있으나 이번 회기에 개정되는 내용이 8개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되며 남은 조항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 법 근거가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폐지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2호
----------	-----------

제안년월일 : 1999. 9. 14.

제안자 : 시종덕위원외 1인

1. 수정(폐지)이유

- 본 조례안은 전문 19조 부칙 4조로 제정되어 있으나 이번 회기에 개정되는 내용이 8개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되며 남은 조항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 법 근거가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조례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
----------	----

제출년월일 : 1999. 7.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사유

'99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 [행정자치부 운영 11250 - 668('98. 12. 16)호 및 서울시 조직 05090 - 1226('98. 12. 31)호] 에 의한 『'99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1일 3회 이상 청소내용 삭제(안 제10조제1호)
- 나. 관리카드 비치 내용 삭제(안 제11조)
- 다. 년2회 점검내용 삭제(안 제13조)
- 라. 개선명령 내용 삭제(안 제14조)
- 마.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 삭제(안 제15조)
- 바. 유료화장실 승인내용 삭제(안 제16조)
- 사. 유료화장실 승인 받은 자의 준수사항 내용 삭제(안 제17조)
- 아.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삭제(안 제18조)
- 자. 부칙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부칙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동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이견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9조(생략)	(현행과 같음)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2. (생략) 3. (생략)	제10조(유지·관리기준) 1. 삭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13조(시설점검)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이상(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4조(개선명령) 구청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6조(유료화장실의 승인)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담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 등 편의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p> <p>③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1회 사용료를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p>	(삭 제)
<p>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p>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지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생략)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 ~ 제3조(생략)	(현행과 같음)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1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1999년 9월 1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 【행정자치부 운영 11250 - 668('98. 12. 16)호 및 서울시조직 5090 - 1226('98. 12. 31)] 에 의한 『'99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고시 일부 삭제(안 제6조)
 - 가축사육의 제한 삭제(안 제10조)
 -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일부 규정 삭제(안 제12조)
 - 수수료의 가산금 삭제(안 제14조)
 - 수수료의 강제 징수 삭제(안 제15조)
 -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 일부 규정 삭제(안 제18조)
 -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 일부 삭제(안 제11조제2안 관련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99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정비종합계획이 하달되어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 일부가 상위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